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위

가. 제안자: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외 9명)

나. 의안번호: 제365호

다. 제안일자: 2019. 1. 31

라. 회부일자: 2019. 2. 7

2. 제안 사유

한강공원 내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다양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원 이용시설을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제3항 신설).

나. 공원 이용시설의 개방 및 이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적 예약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안 제12조 제4항 신설).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붙임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독점사용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한강공원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시 전자적 예약시스템에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됨.

나. 검토의견

1) 한강공원이용시설의 독점사용 방지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3항)

- 공원이용시설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용시설의 종류¹⁾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 1]에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강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
2. "보전"이란 한강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공원이용시설"이란 한강공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원이용시설의 구분 : 1.수상이용시설, 2.체육시설, 3.휴양시설, 4.학습시설, 5.시민편의시설, 6.유희시설, 7.공원편의시설, 8.조경시설, 9.기타시설

- 또한, 공원이용시설은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 대상으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하는 것임.
- 「하천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강공원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러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36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참조).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 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 위에서 본 하천법의 규정 내용과 본 조례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의 설치 목적을 비추어 볼 때, 공원이용시설의 독점적 사용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2조 제3항은 어문 규범에 맞게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원이용시설을 <u>다양한</u>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공원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특정 단체나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원이용시설을 <u>모든</u>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원이용시설의 전자적 예약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4항)

- 안 제12조 제4항은 모든 공원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원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현재,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용시설은 [별표 1]과 같이 규정²⁾되어 있으며 이중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한 공원이용시설은 난지캠핑장, 서울함공원, 일부 체육시설, 생태공원(민간위탁) 등이 있으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과 시설 운영자 개별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사용이 가능함.
- 공원이용시설 중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은 인공암벽장이나 파크골프장 등으로 상시 개방되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는 센터나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음(붙임 1. 참조)

2) 신규 설치된 공원이용시설은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이밖에, 한강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써 잔디밭, 광장, 도로, 야외무대 등에 대해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마련한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에 따라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장소사용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원안내센터에 FAX 또는 우편(E-mail) 및 방문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장소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사용 승인이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시설은 조례에 명시된 공원이용시설인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정단체나 개인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해 이용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공원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시설의 편리이용과 장소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과 같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 시설 등에 대해 전자적 예약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상시 개방시설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p>한강사업본부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공원 이용시설은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므로 특정단체나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약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시민 편리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시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주차장, 자전거대여점·공방 등) 및 소음·안전·청소대책 등 행사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행사(마라톤, 콘서트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조항(안): 상시이용가능 하거나 사전협의를 필요한 이용시설물 등의 경우 전자적 예약 시스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

-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전자적 예약시스템 도입은 시설 별 특성, 이용자, 특정단체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한강사업본부는 특정단체나 개인이 공원이용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위해 시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별표 1]

공원이용시설(제3조제3호 관련)

구 분	공원시설물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보트, 요트, 돛단배, 동력보트, 한강르네상스호, 한강아라호 인명구조선, 기타 선박), 선박계류장, 선착장, 요트마리나, 수상콜택시 승강장 나. 여의도 물빛무대 다. 그 밖에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체육시설	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야구장(어린이, 성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우드볼장,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X-게임장, 론볼링장, 파크골프장, 인공암벽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 나. 그 밖에 시민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
3. 휴양시설	가. 캠핑장, 분수대, 강변물놀이장, 수영장, 선텐장, 전망쉼터, 낚시터(단,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4. 학습시설	가. 자연학습장, 물고기길, 생태학습지원시설(수변생태학습센터, 한강야생탐사센터), 여의도 셋강 방문자센터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5. 시민편의시설	가. 매점 및 카페형 매점시설 나. 교량전망카페, 전망문화콤플렉스(자벌레), 야외원형극장, 야외무대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6. 유희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공원(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MTB코스장, 익스트림장, 자전거교육장 등), 모형항공기 이·착륙 시설, 레이싱경기장, 자전거대여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7. 공원편의시설	가. 주차장, 화장실, 자전거보관소, 조명시설, 음수대, 그늘막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8. 조경시설	가. 잔디밭, 꽃단지, 유채단지, 갈대밭, 보리밭, 초지, 호안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9. 기타시설	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에 설치된 시설

※ 붙임 1. 한강공원 이용시설 운영현황('19.2월 기준)

구 분	직 영 시 설			민간운영시설 (위탁·수익허가)		비 고
	공공예약 시스템 운영	장소사용승인 및 대관	상시이용시설(무료)	온라인예약 시스템 운영	예약 미운영	
체 육 시 설	축구, 야구, 배구, 족구, 농구,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인라인장, X-게임장, 게이트볼장, 비치발리볼, 다목적운동장, 육상연습장	테니스장(자체) 눈썰매장(자체)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팅장 난지국궁장 이촌축구교육장(회원제) 론볼링장	
휴 양 시 설			분수대, 전망쉼터, 낚시터	캠핑장(자체), 수영장(자체) 강변물놀이장(자체)		
학 습 시 설	생태학습시설(직영) 여의도샛강방문시설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시설 (위탁 공공예약시스템)		
시 민 편 의 시 설		광진교8번가 (대관, 무료) 야외무대 (사용승인, 무료)	자벌레		전망카페, 매점	
유 희 시 설	광나루드론공원		놀이터, 자전거교육장 MTB·레이싱경기장, 익스트림체험장		자전거대여소·공방	
편 의 시 설			화장실, 음수대 자전거보관소, 그늘막		주차장	
수 상 이 용 시 설		물빛무대 (대관, 유료) 한강 홍보선 (대관, 유료)		수상택시(자체)	한강아라호(임대운영)	
조 경 시 설			잔디밭, 꽃단지, 갈대밭 등 호안			
기 타	공원 내 영화촬영, 녹화	행사 등 장소 승인 [잔디밭, 운동장(체육시설), 둔치, 광장, 도로 등]		서울함공원(자체)		